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14호

「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3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,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에 따라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용어의 정의(제3조제1호)

- 청년의 나이를 ‘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’에서 ‘19세 이상 45세 이하’로 확대
- 만 나이 통일법(‘23. 6. 28. 시행)에 따라 ‘만’ 표시 삭제
- 「청년기본법」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29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argentina11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